

< 개정내용 >

- (①)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원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
- (②) 지방투자를 촉진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몰기한을 현행 수준으로 3년 연장하되, 장기간 재산세가 감면되는 사례방지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세 감면기간 설정 등
- (③)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한 감면은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대로 감면 3년 연장하되,
 - '창업'의 범위와 관련하여,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조문 간 형평성 및 정합성 제고
- (④-1) 생활인구 유입 증가 및 산업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대로 감면 3년 연장하되,
 - '창업'의 범위와 관련하여, 창업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해당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조문간 형평성 및 정합성 제고
- (④-2) 침체된 지방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외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세컨드홈 감면대상 확대, 취득원인 추가 및 감면대상 주택가액 상향하되, 감면금액 한도를 150만원으로 설정
- (④-3) 기업 사원의 정주여건 개선·기업 부담완화 등을 위하여 사원에게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설
- (⑤) 빈집 철거를 유도하고 철거 후 토지의 신속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토지 및 신축하는 주택·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신설
- (⑥)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은 지역 경제 활성화·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위해 연장하되 수도권·비수도권·인구감소지역으로 감면율 차등 재설계,